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이광성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1392호

다. 발의일자 : 2020. 4. 1

라. 회부일자 : 2020. 4. 8

2. 제 안 사 유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 제40조제1항에서는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를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바, 급수설비 관리 책임에 대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함(안 제40조제1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시의 책임으로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규정

○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에서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되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器具)로 정의하고 있음.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급수설비의 위치(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기준)와 종류에 따라 그 관리 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반면, 현행 조례 제40조에서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를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률유보의 원칙).

2)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안 제40조제1항)

○ 일반적으로 계량기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검침을 위하여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1]하고 있지만, 대지경계선 안에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지경계선 인근(밖)으로 조정하고 있음.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 모든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여건상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사례가 상당수[2] 있고 이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계량기까지의 관리 책임을 수도사용자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와 상충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전체 수전 220만 개의 약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40조제1항은 「수도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하여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의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 주체를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3]은 없음.

○ 다만, 부득이하게 설치 공간을 대지경계선 안에 확보하지 못하여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계량기 보호통)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위치에 따라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계량기 보호통 파손[4]이나 관련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비용 지출 또한 상당할 것이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관리 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임.

「수도법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단,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용자 등

3)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계량기 보호통과 관련된 안전사고, 계량기 보호통 파손 등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다툼에 있어 실제 현행 조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도사업자(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함.

4) 개소 당 정비에 약 70~100만원 소요